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안 미 자 의원)

의안 번호	24-36
----------	-------

발의년월일 : 2024. 4. .

발의자 : 안미자,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채우진, 홍지광

1. 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마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나. 국기의 게양일 등(안 제4조)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기 게양일을 규정함.

다. 국기선양사업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가로기의 게양(안 제6조)

- 가로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안 제7조)

-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3. 26. ~ 4.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긴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5.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10월 2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 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마포구민이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태극기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5조
 (국기선양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한 마포구민에게 가정용 태극기(5,000원)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소계(a)	-	-	-	-	-	-
	○ 태극기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세출	구매비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소계(b)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 총 비용(a-b)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의존 재원	소계	-	-	-	-	-	-
	소계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세외수입 등	-	-	-	-	-	-
지방채		-	-	-	-	-	-
민간자본		-	-	-	-	-	-
기타		-	-	-	-	-	-
합계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신동빈
연락처	02-3153-830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5,000원(가정용 태극기 가격) × 130건(월 평균) × 12월